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 시행안내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지난 2020년 8월 관세청에서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범위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개정 입안계획서가 발표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1. 납세자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훈령 개정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2020호, 2020.8.12.)

2. 개정 사유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범위 추가·확대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시행 일자

- 2021년 5월 1일

II. 주요 개정내용

1.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전담 처리

-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중 고충민원에 대해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국민신문고 민원 중 **고충민원**을 원 처분 담당부서가 아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전담 처리**하도록 하여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 완화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라 납세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신설

- 과태료 부과통지에 앞서 [납세자에게 사전적 불복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과태료 부과통지의 정당성 확보

3. 관세조사 모니터링 제도 도입

- [관세조사 전 과정](#)에서 조사 [절차 준수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법·부당한 관세조사를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4. 기타 개정 사항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규정을 서약서에 반영
- 납세자 및 세관공무원의 제도개선 요청 근거 규정 신설
- 권리보호요청 사안 인지 시 납세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II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 전문

[붙임 2]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 신규대조표

| Contact



김찬란 관세전문가
T 02-6011-3026
E clkim@esein.co.kr



남근혜 컨설턴트
T 02-6011-3076
E khna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